#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2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김원이・위성곤・서미화

이정문 • 남인순 • 서영석

양문석 · 김한규 · 문금주

박지원 · 김선민 · 민형배

정준호 · 이해식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음. 병원 내보안인력 및 장비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의무화됨.

그러나 병원 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은 되풀이되고 있음. 용인의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과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 의 심각한 폭력 및 방화사건은 근절되지 않음. 이에 응급실 내 의료진 을 포함한 보안인력과 직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

인력 등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전국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이 총 115개소가 있는데, 해당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응급실 내 주취폭력이 종종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그리고 의료기관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 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어 음주자로 인한 폭행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벌, 대응하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4조).

법률 제 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를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및 제35조의2의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 보건복지부렁으로정하는 종사자(이하 "응급의료기관등종사자"라고 한다) 및"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10조제1항을"을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로, "아니할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 ①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 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 료법ᅟ 제80조에 따른 간호조 무사를 포함한다), 제2조제5호 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 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 의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 보안인력 및 제35조의2의 응급 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근 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 무하는 보안인력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종사<u>자(이하"응</u> 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 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 급의료기관등종사자"라고 한다) 材)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 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 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u>제10조제1항을</u> 적용 하지 <u>아니할 수 있다</u>.

관한	특례)				
-제10	조제1형	) 및	제2항	· <u>을</u>	
<u></u>	아니한디	<u>}</u> .			